

#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42호 | 2010년 11월 4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심지연 | www.nars.go.kr

## 죽은 자의 디지털 정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김 유 향 \* · 권 순 영 \*\*

### 1. 문제 제기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수많은 사망자들이 네트워크 상에 남긴 인생의 기록(lifelog)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디지털 유품의 상속과 폐기를 대행해주는 사이트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 처리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경우, 2004년 이라크에서 전사한 저스틴 엘스워스(Ellsworth) 병장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메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야후에 요청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야후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요청을 불허하였지만, 2005년 4월 미 시간주 법원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을 허용 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자살 이후 사망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함 전몰 장병들의 부모들이 아들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계정 접근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전몰장병들의 미니홈피의 경우 업체의 묵인 아래 제 3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향후 디지털 유품의 처리와 관련한 분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에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쟁점은 디지털 유품의 재산성 여부와 상속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역할의 범위와 한계 등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내외의 디지털 유품 관련 정책의 현황과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향후 디지털 유품 관련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1] 천안함 사건 전몰장병 미니홈피 현황

| 전몰장병 미니홈피 현황 | 개수 | 업체 대응 |
|--------------|----|-------|
| 제3자에 의한 운영   | 13 | 묵인    |
| 제3자의 단순 로그인  | 5  | 묵인    |
| 악성댓글 삭제요청    | 1  | 삭제    |
| 해지 요청        | 1  | 해지    |
| 특이사항 없음      | 2  | -     |
| 계            | 22 | -     |

자료 : SK커뮤니케이션즈,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현황 및 문제점』,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0, p.1. 참조하여 재작성

### 2. 국내의 관련 개정법률안 현황

인터넷 상의 정보는 일단 이용자가 숨지고 나

\*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장, 정치학 박사, 788-4710, ykim@nars.go.kr

\*\*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788-4712, ksyoun@na.go.kr

면 방치되어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사망자들의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ISP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파악하여 대처하기도 어렵고,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 접근을 요청하더라도 ISP는 제3자에게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 처리와 관련하여 올해 들어서만도 3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 사망자의 정보보호와 △ 배우자 등의 디지털 유품 관리를 골자로 하는 면에서는 유사하나, 요청인의 범위와 ISP의 역할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다'고 판시하여,<sup>1)</sup>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는 재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판결을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로 비판하면서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도 재산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sup>2)</sup>도 있다.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대한 소유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sup>3)</sup> 다소 변화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렇듯 디지털 정보가 재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전기 등 자연력이 현대사회에서 물건의 개념에 포함된 것을 고려

[표 2] 디지털 유품 관리 관련 법률안 현황

| 구 분        | 유기준 의원안                   | 박대해 의원안                       | 김금래 의원안                              |
|------------|---------------------------|-------------------------------|--------------------------------------|
| 제안일        | 2010. 7. 12               | 2010. 7. 21                   | 2010. 9. 9                           |
| 요청인        | 상속인                       | 사전 지정 관리자<br>배우자·2촌 이내 친족·후견인 | 배우자·2촌 이내 친족·후견인                     |
| 요청대상       | 개인정보 목록                   | 미니홈피, 블로그 관리                  | 블로그, 홈페이지 등 관리                       |
| ISP의 권한·의무 | 사망자의 개인정보목록 제공<br>및 파기 의무 | 요청인에게 미니홈피 등<br>관리권한 부여 가능    | 홈페이지 등 관리권한 부여 가능<br>사망자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 |

### 3. 주요 쟁점

#### (1) 개 관

디지털 유품에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디지털 정보의 재산 및 상속성 인정 여부, 사망자의 정보보호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디지털 정보가 재산인 것이 상속의 한 요건이 되고, 디지털 정보가 상속될 경우 사망자의 정보보호에 반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세 쟁점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 (2) 디지털 정보의 재산성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메일·블로그 등은 개인의 재산인가? 대법원은 '디지털 정보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고 배타적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소유의 객체인 물건이 될 수 없

하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정보의 재산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sup>4)</sup>

한편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이메일<sup>5)</sup>, '구성형식·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홈페이지<sup>6)</sup> 등 일정한 디지털 정보는 판례에 의해

1)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2) 배대현, 「거래대상으로서 디지털 정보와 '물건' 개념 확대에 대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Vol.14,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p.304.

3)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4) 김기중,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0, p.25.

5) 서울지법 1995.6.23. 선고 94카합9230 ; 엄밀히는 '서면편지'에 대한 판례이나, 이메일도 서면편지와 내용상의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판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서울지법 2003.8.19. 자 2003카합1713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어 논의의 여지없이 개인의 재산이라 할 수 있다.

### (3) 디지털 정보의 상속성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가 재산이라는 입장에 의하면 디지털 유품의 상속이 가능할 수 있으나, 2차적으로 디지털 정보가 일신에 전속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디지털 정보 중 '계정 정보'는 △ 판례에 의하면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개인정보'<sup>7)</sup>이며, △ 현행 ISP 약관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그 대체수단인 i-PIN과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신에 전속하여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메일, 게시물 등의 콘텐츠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는 서비스 계정 보유자에 의해서만 작성된다는 면에서 일신전속적이라는 견해와, 작성자가 작성한 이후에는 일신전속적이지 않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sup>8)</sup> 그러나 이메일, 게시물 등의 콘텐츠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물법」 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정보라는 점에서, 일신에 전속하지 않아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디지털 콘텐츠가 의미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인정되는 현실에서, 작성자의 사망과 함께 사장되지 않도록 우호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7)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8) 김기중, 위 자료, p.27.

### (4) 사망자의 정보보호 문제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동법 제49조의 '타인'에 사망한 자를 포함하고 있어<sup>9)</sup> 디지털 유품의 상속이 동법 제49조에 반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사망자는 상속인의 인격적 이익과 서로 연결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타인'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유품의 상속이 사망자의 정보보호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10)</sup> 한편 해석론을 떠나 해당 규정의 모호함이 ISP나 상속인의 자율적인 실천의지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유권 해석으로 '타인'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사망자의 정보보호 규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50대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유품을 전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48.8%<sup>11)</sup>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도 요청된다.

### 4. 디지털 유산에 관한 미국의 사례<sup>12)</sup>

외국의 경우 아직 디지털 유품에 관해 법률 차원에서 정비한 국가는 없다. 단지 ISP의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디지털 유품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은 사망자의 홈페이지

9)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162

10) 김기중, 위 자료, p.31.

11)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 「디지털 유품 인식 조사」, 2010년 10월 20일자

12) Ars 테크니카 웹사이트 (최종검색일 : 2010. 10. 18) <<http://arstechnica.com>> ; Findlaw 웹사이트 (최종 검색일 : 2010. 10. 18) <<http://blogs.findlaw.com>>

지를 추모 공간으로 하여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홈페이지 삭제 권한을 부여한다. 마이스페이스(Myspace)는 홈페이지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불허하며 스팸성 글의 삭제 요청만 허용한다. 트위터(Twitter)는 사망자의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정을 삭제하거나 공개 트위터를 보존하도록 하지만 해당 계정에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메일의 경우 구글(Google)은 사망자의 사망 증명서와 계정 위임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사망자 계정에의 접근을 허용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그 관계가 증명된 친권자에게 사망한 이의 이메일 내용을 CD를 비롯한 저장장치에 복사해서 제공하고 있다. 야후(Yahoo)는 제3자의 계정 접근을 불허하며 사망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계정을 삭제한다.

종합하면 ISP는 일반적으로 블로그 등 공개된 정보의 유지 및 폐쇄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을 가진 자의 요청에 응하지만, 계정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 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다.

## 5. 디지털 유품 관련 정책의 고려사항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디지털화네트워킹되고 있지만, 사후에 자신과 연결된 디지털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유품과 관련한 정책에서 먼저 고려할 점은 디지털 유품 정책 규정의 '입법수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이 ISP의 약관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디지털 유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ISP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법에 반하는지 여부처럼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법률규정 등으로 명확히 하되, 일반적인 부분은 관련 부처에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계정 정보 등 상속되지 않는 디지털 정보의 처리 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죽은 자는 권리가 없고 상속인도 상속할 수도 없다면, 디지털 정보는 사실상 무주(無主)의 상태가 되어 방치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ISP가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D의 재활용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3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은 유용한 ID를 소진한 상태이므로, 방치되어 있는 사망자의 ID를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터넷 세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별 또는 이슈별로 이를 규율할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율적 대응을 존중하는 인터넷 정책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유품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간은 큰 틀 안에서 이용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디지털 유품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 양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수시로 발간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 소식지입니다.

※ 본 내용을 허가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